

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11월 13일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09년 11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7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2009. 12. 18)
상정 및 의결

2. 제안설명

(제안 설명자 :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법률 제9569호, 2009. 4.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 「부천시새주소위원회」를 「부천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의 일부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함.(안 제8조)
- 나.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9조)

- 도로명주소안내판: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
- 도로명주소안내도: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

다. 부천시새주소위원회를 부천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함.(안 제25조)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부천시 도로명주소
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도로명주소
소법」”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
한 법률」”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으로 한다.

제2장과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중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를 “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 등”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
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
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부천시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의 징수는 부천시 수입증지로 한다.

제8조의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원인자부담)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 집행한다.

제4장과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목 중 “도로명사업”을 “법”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도로명사업”을 각각 “법”으로 한다.

제12조제목 중 “도로명”을 “도로명주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도로명사업담당부서”를 각각 “도로명주소담당부서”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장의 제목 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로명시설”을 각각 “도로명주소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축물 등”을 “건물 등”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사업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 관련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및 위치
2. 계약 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할 경우의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제목 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도로명시설”을 각각 “도로명주소시설”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한다.

제7장의 제명 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광고의 범위) ① 시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제3항 중 “안내표지판”을 각각 “도로명주소안내표지판”으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를 “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로 한다.

제9장의 제목 “부천시새주소위원회 등”을 “부천시도로명주소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중 “위원회”를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부천시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도로명사업 관계 공무원”을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명사업”을 “도로명주소사업”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⑥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제27조제1항 중 “도로명사업담당과장”를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사항

별표 1·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5호
의결년월일	2009. 12. 23. (제157회)

제출년월일 : 2009. 11. 16.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법률 제9569호, 2009. 4.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 「부천시새주소위원회」를 「부천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의 일부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함.(안 제8조)
- 나.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9조)
 - 도로명주소안내판: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
 - 도로명주소안내도: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
- 다. 부천시새주소위원회를 부천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함.(안 제25조)

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부천시 도로명주소
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도로명주소
소법」”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
한 법률」”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으로 한다.

제2장과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중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를 “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 등”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
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
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부천시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의 징수는 부천시 수입증지로 한다.

제8조의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원인자부담)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 집행한다.

제4장과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목 중 “도로명사업”을 “법”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도로명사업”을 각각 “법”으로 한다.

제12조제목 중 “도로명”을 “도로명주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도로명사업담당부서”를 각각 “도로명주소담당부서”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장의 제목 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로명시설”을 각각 “도로명주소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축물 등”을 “건물 등”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사업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 관련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및 위치
2. 계약 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할 경우의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제목 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도로명시설”을 각각 “도로명주소시설”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한다.

제7장의 제명 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광고의 범위) ① 시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제3항 중 “안내표지판”을 각각 “도로명주소안내표지판”으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를 “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로 한다.

제9장의 제목 “부천시새주소위원회 등”을 “부천시도로명주소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중 “위원회”를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부천시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도로명사업 관계 공무원”을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명사업”을 “도로명주소사업”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⑥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제27조제1항 중 “도로명사업담당과장”를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사항

별표 1·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p>	<p>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도로명주소법」</p> <p>-----</p> <p>-----</p> <p>-----</p> <p>-----</p>
<p>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제2장 도로명의 변경</p>	<p><삭 제></p>
<p>제3조(도로명의 변경요건)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2. 도로명시설을 설치하여 3년이 지난 후 도로명 변경신청일 현재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자(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 이하 같다)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p> <p>제4조(도로명의 변경) ① 제3조제2호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신청을 받은 날 또는 제3조제1호의 사유로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 이외의 자도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견의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1. 해당 도로의 현행 명칭과 희망하는 명칭(복수안)</p> <p>2. 해당 도로명의 변경신청 사유</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3.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제출자의 범위, 의견제출의 방법 및 기간</p> <p>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신청을 받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부천시 새주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신청된 도로명의 연혁, 제정·변경추진 사유 2. 변경신청된 도로구간의 건물 번호의 수 및 주소사용자 현황 3.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 및 조달방법 4.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 및 시장의 의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와 변경절차(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만을 말한다)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⑤ 시장은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도로명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고한 날부터 31일 이후 40일 이내에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⑥ 제3조제2호의 경우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고,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 변경 희망안의 1순위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규정된 주소사용자 2분의 1 이상에게 서면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⑦ 시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로명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산 자료를 정리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된 도로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p> <p>① 시장은 영 제21조 및 이 조 제4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 번호의 변경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고지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에 관한 사항 3. 해당 도로명을 부여한 사유 4. 법적주소의 전환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우선적으로 통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2회 이상하였으나 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편물로 서면고지를 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서면고지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p> <p>제6조(건물번호판의 규격) ① 영</p> <p>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로, 노(路)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1,0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15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5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2.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이는 경우에는 글자의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예외로 한다)으로 한다. 3.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한 폐다각형의 내부면적이 제1호에서 정하는 규격 이상으로 한다. <p>②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p>	<p>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제7조(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의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있는 위치에 운전자 및 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건물번호판설치완료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의 설치 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우만을 말한다), 건물번호판의 교부시기(신청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p>	<p>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교부판</p>

현행	개정안
<p>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을 재교부받은 경우에는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물번호판 설치완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p> <p>②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부천시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한다.</p> <p>③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의 징수는 부천시 수입증지로 한다.</p>
<p><신설></p>	<p>제8조의2(원인자부담) 시장은 별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 집행 한다.</p>
<p>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p>	<p><삭제></p>
<p>제9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별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p>	<p><삭제></p>

현행	개정안
<p>② 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 및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건물번호부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준공 예정일(건축물의 경우는 임시사용·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 90일 이전에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인가서 2. 축척 3,000분의 1 이상의 사업계획도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명시설의 자체 제작, 설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2. 사업지역에 설치할 도로명시설의 종류, 위치 및 수량 3. 도로명시설의 설치 기간 및 비용 4.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시장이 직접 설치할 경우의 비용 납부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행	개정안
<p>④ 제3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의 자체 제작·설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시행자는 요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시설의 직접 설치 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p>	
<p>제10조(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p>	<p><삭 제></p>
<p>① 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물번호판설치완료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명판설치완료서를 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시설을 시장이 직접 설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신청(건축물의 경우는 임시사용·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1조(도로명사업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u>도로명사업</u>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u>도로명사업</u>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p>	<p>제11조(<u>법</u>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 ----- <u>법</u> -----<u>법</u>----- ----- ----- ----- ----- ----- ----- ----- -----.</p>
<p>제12조(<u>도로명</u> 관련 자료의 통보)</p> <p>① 시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u>도로명사업담당부서</u>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u>도로명사업담당부서</u>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 관련 자료를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2조(<u>도로명주소</u> 관련 자료의 통보)</p> <p>① ----- ----- ----- ----- ----- ----- -----<u>도로명주소담당부서</u>----- ----- -----.</p> <p>② <u>도로명주소담당부서</u> ----- ----- ----- ----- ----- -----.</p>

현행	개정안
<p>제13조(도로명기본도의 작성)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도로명기본도에 철도, 호수, 하천, 공원, 교량 등의 배경자료와 건축물군, 교차로, 지하철·철도역사, 관광지 등의 보조자료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14조(도로명 등의 시스템 반영) 시장은 도로구간의 현황, 도로별 해당 도로명의 부여·변경사유 및 부여·변경일자 등을 부천시 도로명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6장 <u>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u></p>	<p>제6장 <u>도로명주소시설</u> ----- -----</p>
<p>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u>도로명시설</u>을 일제조사한 결과, 훼손, 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u>건축물</u>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u>도로명시설</u>의 재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 ----- <u>도로명주소시설</u> ----- ----- ----- ----- ----- ----- ----- ----- ② ----- -----<u>도로명주소시설</u> ----- ----- -----.</p>

현행	개정안
<p>제16조(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사업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명시설의 종류, 수량 및 위치 2. 계약 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시설 일제조사계획 5. 도로명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p>③ 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위탁할 경우의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p>	<p>제1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사업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 관련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및 위치 2. 계약 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p>③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할 경우의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7조(도로명시설의 점검) ① 시장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p> <p>② 수탁자는 도로명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7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① ----- ----- ----- 도로명주소시설 ----- -----.</p> <p>② -----도로명주소시설 ----- ----- ----- ----- -----.</p>
<p>제18조(수탁자의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제18조(수탁자의 지도·감독) ----- -----도로명주소시설----- ----- -----.</p>
<p>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p>	<p>제7장 도로명주소안내판 등 ----- -----</p>
<p>제19조(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p> <p>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에 대한 광고계획</p>	<p>제19조(광고의 범위) ① 시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와 전자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및 제작수량</p> <p>3. 안내표지판의 종류, 제작수량, 설치위치 및 규격</p> <p>4. 광고사업 참가자격</p> <p>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및 제2항의 제출서류</p> <p>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광고사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의 제작·구성계획</p> <p>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 계획</p> <p>3.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p> <p>4. 그 밖에 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마감일부터 15일 이내에 부천시새주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광고사업자를 심의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1. <u>광고사업자의 수행능력</u></p> <p>2. <u>광고사업 수행의 실현가능성</u></p> <p>3. <u>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u></p> <p>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p> <p>④ 제3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배점부여기준은 부천시새주소위원회에서 정한다.</p> <p>⑤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에게 부천시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p> <p>① (생략)</p> <p>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u>안내표지판</u>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u>안내표지판</u>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시장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p>	<p>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u>도로명주소안내표지판</u>-----</p> <p>-----.</p> <p>③ -----</p> <p>-----</p> <p><u>도로명주소안내표지판</u> -----</p> <p>-----.</p>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생 략)</p> <p>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광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u>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안내시설의 설치</u></p> <p>2.~4.(생 략)</p> <p>제9장 <u>부천시새주소위원회 등</u></p>	<p>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현행과 같음)</p> <p>1. ----- ----- ----- ----- --<u>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u></p> <p>2.~4.(현행과 같음)</p> <p>제9장 <u>부천시도로명주소위원회 등</u></p>
<p>제2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영</p> <p><u>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새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1. <u>도로명의 부여·변경(도로구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u></p> <p>2. <u>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u></p> <p>3. <u>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u></p> <p>4. <u>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u></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5.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p> <p>제2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u>위원회</u>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1. <u>도로명사업 관계 공무원</u></p> <p>2. <u>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u></p> <p>3. 4. (생략)</p> <p>④ <u>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u></p> <p>⑤ (생략)</p> <p>1. <u>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u></p> <p>2. <u>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u></p> <p>3. <u>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u></p> <p>4. <u>회의 참석 및 위원회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u></p>	<p>제2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u>법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부천시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 -----</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u>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u></p> <p>2. <u>도로명주소사업</u> -----</p> <p>-----</p> <p>3. 4. (현행과 같음)</p> <p>④ <u>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p> <p>⑤ (현행과 같음)</p> <p>1. <u>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u></p> <p>2. <u>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u></p> <p>3. <u>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u></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213 300 384 338"><신 설></p> <p data-bbox="197 533 798 752">제2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u>도로명사업담당과장이 된다.</u></p> <p data-bbox="233 770 432 808">② (생 략)</p> <p data-bbox="197 831 798 992">제28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ol data-bbox="233 1010 798 1406" style="list-style-type: none"> 1. <u>회의일시 및 장소</u> 2. <u>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u> 3. <u>토의 및 진행사항</u> 4. <u>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u> 5. <u>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p data-bbox="839 300 1390 517">⑥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p> <p data-bbox="807 533 1390 752">제27조(간사) ① ----- ----- --<u>도로명주소사업담당부서의 장</u> ----.</p> <p data-bbox="839 770 1134 808">② (현행과 같음)</p> <p data-bbox="807 831 1390 992">제28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ol data-bbox="839 1010 1390 1294" style="list-style-type: none"> 1. <u>회의일시 및 장소</u> 2. <u>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u> 3. <u>토의 및 심의결과</u> 4. <u>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사항</u>

〈관계 법령발췌서〉

○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3 (도로명주소대장)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나타내기 위한 도로명주소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도로명 또는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폐지
2.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설정·변경·폐지
3. 도로명주소에 사용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4.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정비·철거
5. 관련 지번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참고사항의 변경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처리장치에 의하여 작성·관리되어야 한다.

제8조의4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도로명주소안내판의 광고 <개정 2009.4.1>)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판에 장애가 없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사업자의 선정과 광고방법 및 광고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비 수입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제17조 (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조례 제정 <개정 2009.4.1>)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를 부여·관리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유지관리·손해배상공제가입·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제22조의2 (도로명주소위원회) ① 도로명의 부여·변경,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를, 시·도에 시·도도로명주소위원회를, 시·군·자치구에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위한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6.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도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도의 집행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3. 시·도의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도로명

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1]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도로명의 변경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소사용자의 5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그 주소사용자는 시장등에게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동으로 포함된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도로명이나 그 도로명의 유사도로명을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는 자

2. 기초번호방식 도로명 또는 일련번호방식 도로명을 사용하지 않는 도로구간의 종속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하려는 경우: 그 종속구간에 주소가 있는 자

3. 그 밖의 경우: 각각의 도로구간에 주소가 있는 자

② 도로구간이 2개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시장등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이거나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현재의 도로명

2. 부여하려는 예비도로명

3. 도로명의 변경 사유

4.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5.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명의 내력, 현행 도로명의 부여 사유와 도로명의 변경 사유

2. 해당 도로구간에 있는 건물번호의 개수 및 그 도로구간에 주소가 있는 자의 현황

3. 도로명의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과 그 비용의 조달방법

4.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주민 및 시장등의 의견

5.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과, 변경 내용 및 절차(변경 내용 및 절차는 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등은 제4항의 심의 결과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도로명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의 변경을 요구한 자가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이고 새로 사용될 도로명(이하 "후보도로명"이라 한다)을 제시한 경우로서 제4항의 심의 결과 현재의 도로명을 후보도로명(2개 이상일 때에는 1순위 후보도로명을 말한다)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시장등은 제7항 본문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서면동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서면동의를 받은 날이나 서면동의를 생략하기로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 변경사항과 변경기준일(변경사항의 고시일을 말한다)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시장등은 제7항 본문에 따른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5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 도로명을 예비도로명 또는 후보도로명이 아닌 다른 도로명으로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하여야 한다.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항 본문에 따른 동의 없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

1. 도로명에 사용된 도로별 구분기준을 제6조제2항에 따른 도로별 구분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

하는 경우

2. 기초번호방식 도로명의 기초번호를, 그 도로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와 같게 변경하는 경우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의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작성) ① 시장등이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작성하는 도로명주소 기본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구역의 이름 및 경계
2. 도로선
3.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
4. 도로명
5. 기초번호와 기초간격
6. 필지 경계와 지번
7. 건물등의 위치 및 형태
8. 건물번호와 그 주된 출입구
9. 관공서·학교 등 주요 공공시설물의 이름
10. 철도, 호수, 하천, 공원, 다리 등의 배경자료
11. 그 밖에 도로명주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의2 (원인자 부담)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그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인가·허가·승인을 그 인가·허가·승인권자에게 신청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이하 이 조에서 "설치비"라 한다)를 부담하려는 경우에만 설치계획서에 포함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의 지역, 내용 및 계획도
3.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계획(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수량 및 설치 위치를 포함하며, 개발사업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예상 설치비와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포함한다)
4. 도로망 계획도
5. 비용부담계획(비용 납부 예정일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시장등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도로구간의 설정과 도로명·기초번호·건물번호의 부여 등을 말한다)

② 개발사업의 인가·허가·승인권자는 그 인가·허가·승인을 할 때 개발사업시행자가 시장등에게 설치계획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인가·허가·승인을 신청할 때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독려할 수 있다.

④ 도로·건물등의 사용승인권자·준공권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계획서(제5항제1호의 수정계획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정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했거나 설치비를 시장등에게 냈는지 확인한 후 그 개발사업에 따라 설치된 도로·건물등에 대한 사용승인·준공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시장등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수정한 경우 그 수정계획서(시장등이 계산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예상 설치비를 포함한다. 이하 "수정계획서"라 한다)
2. 도로구간의 설정과 도로명·기초번호·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관한 계획

⑥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예상 설치비를 계산하여야 한다.

1. 조달 단가
 2. 설치계획서를 받기 바로 전에 시장등이 설치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
- ⑦ 개발사업시행자는 수정계획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그 수정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⑧ 시장등은 제7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설치계획서
2. 수정계획서

3. 개발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의 내용
4.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제8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개발사업시행자는 통보받은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⑩ 시장등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비를 내기로 한 경우(제1항제5호의 비용부담계획이 포함된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설치계획서에 있는 비용 납부 예정일 10일 전에 그 비용 납부 예정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 시설 설치비 납부서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내야 한다.

⑪ 시장등은 설치비를 내기로 한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비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⑫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로 한 개발사업시행자(제1항제3호 중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예상 설치비와 설치 완료 예정일이 포함된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⑬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로 한 개발사업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그 시설의 설치를 끝내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 예정 완료일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설치비는 수정계획서에 적힌 예상 설치비(제7항 전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제8항의 심의 결과에 따른 예상 설치비를 말한다)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들인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⑭ 제13항 전단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그 납부기한까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를 끝내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설치비를 시장등에게 내야 한다.

⑮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장등이 제10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를 보낸 경우
2.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3항 전단에 따라 납부서를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를 끝내지 않은 경우

제17조 (유지관리의 위탁 등)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8조 (광고)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게재할 수 있는 광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경우: 소유자의 이름, 주소, 업소명, 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 도안 등
2. 도로명주소안내판의 경우: 업소의 이름 또는 상징 도안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를 게재한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제작·설치·배포하기 전에, 시장등은 광고를 게재한 도로명주소안내판을 제작·설치·배포하기 전에 미리 그 광고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로명주소안내판을 이용한 광고는 도로명주소안내판에 붙인 안내도에만 게재하여야 한다.

④ 광고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 및 광고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받으려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건물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건물번호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도로명을 새로 부여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부여·변경을 고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건물번호와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고시 사항 중 해당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고시하여야 하며, 제2항 후단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도 받은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번호판을 제1항 후단에 따라 재교부받거나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후단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 (도로구간등의 고시) ① 법 제18조제1항, 이 영 제11조의2제5항 및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도로구간등의 부여·변경·폐지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공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도로명·기초번호의 부여를 수반하는 도로구간의 설정을 고시하는 경우
 - 가.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 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 다.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 라. 도로구간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 마.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 고시일
 -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도로명·기초번호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구간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
 - 가. 변경 전·후의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 나. 변경 전·후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 다. 변경 전·후의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 라. 도로구간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 마. 도로구간등의 변경 고시일
 -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로명만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
 - 가.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 나. 변경 전·후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 다. 새로운 도로명에 의한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 라.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 마. 도로명의 변경 고시일
 -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도로구간만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
 - 가. 변경 전·후의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 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 다.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 라. 도로구간 변경 고시일
 - 마.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기초번호만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
 - 가.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 나. 변경 전·후의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
 - 다.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 라.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 마. 기초번호 변경 고시일
 -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도로명·기초번호의 폐지를 수반하는 도로구간의 폐지를 고시하는 경우
 - 가. 제7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 나. 폐지 전 도로명과 그 폐지 사유
 - 다. 도로구간 폐지 고시일
 - 라.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시 예정일 5일 전에 시장등은 시·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에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에게 고시 예정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로명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하고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변경·철거하여야 한다.

제22조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사항) ① 시장등이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전의 주소
2.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3. 도로명주소의 부여일(고시인 경우에는 고시일을 말한다)과 그 부여 사유
4. 도로명주소에 사용된 도로명의 고시일과 그 도로명의 부여 사유

5. 고지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 절차 및 기간(10일 이상으로 한다)에 관한 사항(고시인 경우에는 생략한다)

6.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 요건 및 절차

7. 공법관계에 사용되는 각종 공공문서상의 주소 전환계획

8.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등이 신청을 받아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으로 한다.

③ 시장등이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변경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주소의 변경일(고시인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을 말한다)과 그 변경 사유

2. 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사항

④ 시장등이 신청을 받아 도로명주소를 변경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제1항제1호·제2호·제8호 및 제3항제1호의 사항으로 한다.

⑤ 시장등이 도로명주소를 폐지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도로명주소

2. 도로명주소의 폐지일과 그 폐지 사유

3.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직권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한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고지할 때에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마친 날(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전체에 대하여 설치를 마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고지를 할 수 있다.

1. 고지 대상자가 해당 시·군·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고지 대상자를 두 번 이상 방문하였으나 고지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여 방문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② 시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통한 서면 고지를 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명주소의 고시 예정일 5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와 해당 시·도지사에게 고시 예정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 사실이 고지 대상자에게 고지됐음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보등을 이용하여 제2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변경된 도로명주소에 따라 정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주민등록의 변경요청을 한 사실을 해당 주소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고지·고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 (신청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 절차) ① 시장등은 신청을 받아 한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고지·고시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해당 시·군·구의 홈페이지 등에 제22조제2항 또는 제4항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아 도로명주소를 부여·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제5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 (도로명주소 폐지의 고지·고시)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폐지할 때에는 고지를 생략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우편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폐지를 고지할 때에는 공보등을 이용하여 제22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주소 폐지의 고지·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